2026년 제1차 상생협력분과 회의결과

1. 회의개요

□ 회의명 : 제1차 상생협력분과 회의

□ 일　시 : 6월 25일(목) 16:00

□ 장　소 : MDIA 대회의실

□ 참석자(총14명)

○ 한국해양대학교 고형석 교수, 경희대학교 최민식 교수,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박형택 투자분과위원장, 한국법제연구원 김형건 박사, 한국소비자원 송혜진 박사, 한국웹툰산업협회 김순영 상근부회장, 한국음악실연자협회 권민혁 팀장, 한국인공지능·소프트웨어테스팅협회 배현철 회장, 한국인공지능·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규일 팀장, ㈜원스토어 김종원 팀장, ㈜에스비에스 심성우 변호사,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 서영석 센터장, 박영하 부장, 김서현 사원

□ 프로그램

시 간	세부 내용	비 고
16:00~16:01	▸ 개회	
16:01~16:05	▸ 인사말씀	위원장
16:05~16:35	▸ 상생협력분과 개편 안내 및 운영 방안 논의	
16:35~18:00	▸ 발제 -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반영 예정 법령 개정 사항 안내 -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적 효력과 개선방안	고형석 교수
18:00	▸ 폐회	

2. 논의내용

□ 상생협력분과 개편 안내 및 운영 방안 논의

○ 기존 메타버스 상생협력위원회 및 메타버스 유관기관협의회 통합 및 AI·XR 얼라이언스 상생협력분과 개편 안내

○ 분과원 구성 및 2026년 분과 회의 운영 방안 논의

○ 2026년 총 3회 정기 회의 개최

○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개정 관련 사항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및 가상융합산업 공정거래 관련 쟁점 및 법제도 개정 방안 논의 예정

□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반영 예정 법령 개정 사항 안내

○ 하도급법 개정 사항

- 부당한 특약의 사법적 효력(무효) 요건에 관한 사항
-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에 관한 사항
- ‘주요 에너지’에 대한 정의 및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

○ 전자상거래법 개정 사항

- 온라인 플랫폼상 개인 간 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 신설
-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
-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사용후기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사전 공개에 관한 사항
-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

○ 상생협력법 개정 사항

-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
-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관한 사항
-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 신설 및 에너지 요금의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관한 사항

○ 기타 법령 제·개정 사항

-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사항
- 온라인 중개 플랫폼 공정화법(안)
-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사안)

□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적 효력과 개선방안

○ 하도급법의 제정 목적과 하도급법 개정(2025. 4. 1.)에 의한 부당특약에 대한 사법적 효력 규정 신설의 의의

- 2013.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
- 2025. 4. 1.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무효를 명시적으로 규정

○ 개정 하도급법의 문제점

- 무효인 부당특약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각호에서 규정된 것으로 국한되는가의 문제
- 부당특약의 무효요건에 대한 이원적 구성의 타당성
-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유와 동법 시행령 및 고시(이하 '하위법령')에서 정한 사유가 중복적인 경우에 어느 요건에 따라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의 문제

- 현저성이 충족되어야 무효가 되는 부당특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 원사업자가 포함되는지의 문제

- 무효인 부당특약에 따라 이행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

- 하도급거래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부당특약인 경우에 나머지 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문제

-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특약의 경우에 현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부당특약을 무효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지의 문제

□ 표준계약서·약관 개정 관련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

○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이라도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나, 공공공사나 용역 등은 국가계약법 및 개별 사업법의 하도급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우선 적용될 수 있음

○ 하도급법 개정 사항 중 부당특약의 무효 및 관련 손해배상 조항은 도급(하도급)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며,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에서 제·개정 중인 표준계약서에도 반영 예정

○ 인공지능기본법상 표시의무(제 31조)관련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하여 2차 분과 회의시 공유 예정

○ 표준계약서 및 약관 보급을 위하여, 부처 출자 펀드의 투자 대상 기업에 한하여 사용 의무화를 고려하는 방안 제시

○ 부당특약의 무효요건에 대한 이원적 구성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에서 심결제도를 운영하다보니 발생하는 법 기술상의 측면도 고려해야 함

붙임1 2026년 제1차 상생협력분과 회의 참여자 명단

No	소속	성명	비 고
1	한국해양대학교	고형석 교수	분과장
2	경희대학교	최민식 교수	
3	한국모바일게임협회	박형택 투자분과위원장	
4	한국법제연구원	김형건 박사	
5	한국웹툰산업협회	김순영 상근부회장	
6	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	권민혁 팀장	
7	한국소비자원	송혜진 박사	
8	한국소프트웨어테스팅협회	배현철 회장	
9	㈜원스토어	김종원 팀장	
10	㈜에스비에스	심성우 변호사	
11	한국인공지능·소프트산업협회	김규일 팀장	
12	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 (MDIA)	서영석 센터장	
13		박영하 부장	
14		김서현 사원	